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10100367

[www.coffeenie.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1-08-2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05

COFFEENIE

정 보 공 개 서

(주)커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04.23.

주식회사 커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8, 2층 (도곡동, 은하수빌딩)

전 화: 02-546-1325

팩 스: 02-546-1335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02-546-132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 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주식회사 커피니	COFFEENI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8, 2층 (도곡동,은하수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 7. 1	2009. 7. 1	우정선	02-546-1325	02-546-1335
	법인등록번호	110111-4128371	사업자등록번호		211-88-28926

※ 2009.07.01자 "(주)푸른나무커피"의 명칭으로 법인 설립이 되었으며, 2010.01.08자로 법인명이 "주식회사 커피니"로 변경 등록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우정선	COFFEENI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8, 2층 (도곡동,은하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우정선	02-546-1325	02-546-1335
사용인 (임원)	윤종우	COFFEENI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8, 2층 (도곡동,은하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우정선	02-546-1325	02-546-1335
사용인 (임원)	이병준	COFFEENI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8, 2층 (도곡동,은하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우정선	02-546-1325	02-546-1335
사용인 (임원)	박종삼	COFFEENIE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8, 2층 (도곡동,은하수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우정선	02-546-1325	02-546-133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 (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COFFEENIE(커피니)]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COFFEENIE (커피니)	
상 호	COFFEENIE OO 점	
상표(서비스표)	커피니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번호:제41-2014-0028923 호 출원인(등록신청자): 주식회사 커피니
	커피니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번호: 제41-2014-0048433 호 출원인(등록신청자): 주식회사 커피니
광 고	바른 커피 맛있는 커피 커피:니 커피:니  COFFEENIE CAFE COFFEENIE CAFE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사항 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250,625	3,445,651	-1,195,026	4,505,936	-137,102	-164,077
2022년	2,334,550	3,181,332	-846,782	4,807,108	47,085	49,690
2023년	2,694,206	3,504,197	-809,991	5,224,703	32,576	36,790

(※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참고.)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음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COFFEENIE(커피니) 직영 및 가맹사업을 운영합니다.

당사에서 산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순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우정선	대표이사	1989. 2 ~ 1992. 9	기업은행 행원	연수 및 수신
			1992. 10 ~ 2000. 1	평화은행 대리	수신 및 여신
			2009. 7 ~ 2020. 8	(주)커피니 상무	마케팅
			2020. 9 ~ 현재	(주)커피니 대표이사	경영총괄
	박종삼	사내이사	2021. 12 ~ 현재	(주)커피니 사내이사	마케팅
	윤종우	전무	2021. 03 ~ 현재	(주) 커피니 전무	관리
	이병준	감사	2021. 12 ~ 현재	(주)커피니 사외이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2	2	23

(※ [별첨 2.]“2023년도 원천징수이행 신고서” 참고.)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COFFEENIE(커피니)외에 최근 3년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커피니	상표서비스표	2014 7. 18 출원	41-2014-0028923 / 41-0340004-0000	(주)커피니	2025. 12. 01
커피니	상표서비스표	2014. 7. 18 출원	40-2014-0048433 / 40-1141852-0000	(주)커피니	2025. 11. 10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COFFEENIE(커피니) 가맹사업 현황

1. COFFEENIE(커피니) 가맹점을 시작한 날: 2009년 11월 5일

COFFEENIE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9년 10월 19일

2. COFFEENIE(커피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푸른나무커피	COFFEENIE	유수병	2009.07 ~ 2010..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9-14 모니카빌딩 3층
(주)커피니	COFFEENIE	유수병	2010.01 ~ 2020. 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4길 29, 2 층(논현동, 제이큐브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6 (신사동 636-2)
(주)커피니	COFFEENIE	우정선	2020..05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8, 2층 (도곡동,은하수빌딩)

3. COFFEENIE(커피니) 업종

영업표지	업종	
COFFEENIE	대분류	소분류 (주요상품)
	기타 외식	커피전문점(커피음료, 기타 제조음료 외)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COFFEENIE(커피니)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7	80	17	86	69	17	72	53	19
서울	26	16	10	25	15	10	22	11	11
부산	1	1	-	1	1		1	1	
대구	-	-	-						
인천	2	-	2	1		1	1		1
광주	-	-	-						
대전	18	16	2	14	12	2	13	11	2
울산	-	-	-						
세종	-	-	-						
경기	10	9	1	10	8	2	7	5	2
강원	2	2	-	2	2		2	2	
충북	2	1	1	1		1	1		1
충남	2	1	1	2	1	1	2	1	1
전북	25	25	-	22	22		17	16	1
전남	2	2	-	2	2		2	2	
경북	6	6	-	5	5		3	3	
경남	1	1	-	1	1		1	1	
제주	-	-	-						

5. 최근 3년간 COFFEENIE(커피니)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87	5	0	12	5	80
2022	80	4	0	15	2	69
2023	69	2	0	18	6	53

(※[별첨 3] "COFFEENIE 전국 가맹점" 참고.)

6. COFFEENIE(커피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COFFEENIE(커피니)외에 최근 3년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매출은 제외)과 산정기준

COFFEENIE(커피니)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다만, 대전지역의 2개 가맹점은 PO를 사용하지 않는 특수매장으로 집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개월미만 운영매출은 제외하였으며, 6개월이상 12개월미만운영 점포는 월평균 * 12개월로 예상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커피니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53	6년 11개월 26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2023년 손익계산서상 광고 및 판촉과 관련된 회계계정의 보조원장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비공개)	32,457	32,457	0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0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계약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 기관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산업은행	지정 산업은행 지점	-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상기 기관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예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가맹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소정서식의 가맹금 예치를 정해진 납입날짜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서식의 계약 날짜가 도래했을 때 가맹예치금이 가맹본부에 지급 됩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COFFEENIE(커피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기설비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초도 물품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입비	5,500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경우	개점 전까지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을 제외함 금액	

				만 반환함 (개점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3,300	계약 체결일까지	교육시작 1일 전까지 계약 해지의 경우	교육이 시작된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개점행사비	0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의 경우	영업개시 행사준비를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은 반환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까지	- 가맹금 및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및 원상회복의무)의 불이행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11,800
가입비	5,500
교육비	3,300
개점행사비	0
계약이행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99㎡[3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	------	----	-------	------	----

총계		약 40,500			
인테리어	가맹본부	7,000	계약 체결 후 3회 분납	공사 전 계약취소	감리비 7,000
기기설비	가맹본부	27,000	개점일 전까지	개점 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비용 제외)	커피 머신, 그라인더, 냉장고, 냉동고, POS 등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6,500	개점일 전까지	개점 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비용 제외)	오픈초기 필요한 각종 원재료 및 집기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0	개점일 전까지	개점 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비용 제외)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로부터 인테리어 매뉴얼 및 설계도와 투시도를 제공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감리비 (30평기준) 칠 백칠십만원(₩7,700,000)(부가세포함)을 개점일 전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므로 공사계약은 계약점주와 인테리어업체 간에 직접 체결되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감리비 외에는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 : 02-546-1325)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며,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COFFEENIE(커피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Cf) 상기 품목은 확정 사항이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되며, 매장의 상황 및 환경, 메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상호 사용료 및 경영지원료	가맹본부	매월 220	매월 말일까지	해당없음	상표/상호 사용료 및 경영지원에 대 한 대가를 후불형 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반환 하지 않음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리스료	해당사항 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사안별로 협의후 분담	광고진행 전 공지	광고시행 전	광고시행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광고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협의후 분담	행사진행 전 공지	행사시행 전	행사시행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행사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교육훈련비	해당사항 없음					
간판류 임차료	해당사항 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협의후 결정	변경공사 완료일 까지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사항 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	협의후 결정	보수공사 완료일 까지			교체,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재고관리 비용	해당사항 없음					
회계처리 비용	가맹본부	매월 110	매월 말일까지	해당없음	회계처리에 대한 대가를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세무대행료 포함 / 협의 후 진행 여부 결정
POS 사용료	해당사항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24%	매월 말일까지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분기별 1회	담당: 경영지원팀 (02-546-1325)
위생관리	가맹점의 위생 및 청결상태 점검 (담당 슈퍼바이저 직접방문)	월 1회(이상)	담당: 사업지원팀 (02-546-1325)
서비스, 제품의 품질(맛) 및 매장환경 관리	가맹점의 서비스, 맛 및 전반적인 매장환경 점검 및 관리 (담당 슈퍼바이저 직접방문)	월 1회(이상)	담당: 사업지원팀 (02-546-1325)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 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COFFEENIE(커피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 커피니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가맹계약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일(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 포함) 및 손해배상액등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고,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가맹본부에 완제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맹비 / 교육비 880만원 (팔백팔십만원, 부가세 포함) 및 계약이행 보증금 300만원(삼백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41쪽에 나와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시안과 가맹본부의 매뉴얼에 따른 가맹본부만의 고유 인테리어 등을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외에는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물품, 비품, 소모품 및 시설 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된 상품의 완전물에 한하여 가맹본부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영업비법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되며,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COFFEENIE(커피니)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들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한가 적용 : 해당사항 없음

하한가 적용 : 해당사항 없음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가 물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	--------	-----------	--------	----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경쟁업체 또는 타사 가맹점에 공급 또는 판매할 수 없음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계약해지	
타사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영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커피니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	------------------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인구 0.3만명 당 1점포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행정구역당1점포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특수 건물 내구역당 1점포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

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COFFEENIE(커피니)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2023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72.55	27.45%	0%	0%

2) 2023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COFFEENIE(커피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4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4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14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4조
○ COFFEENIE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14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4조
○ 기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4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공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사항(명의변경, 점포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15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 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1회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해태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자점 매입을 할 시 가맹본부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규정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1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15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5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	42조 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존계약에 따른 가맹금은 포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4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점포개발팀 (02-546-1325)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양수인은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교육비 금 "330"만원(부가세포함) 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또는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 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 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 음. (상속인이 다수일 경 우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함)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 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 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함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	-
업무위탁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COFFEENIE(커피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커피 및 차(tea)류를 판매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사업지원팀 (02-546-132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맹점 사업자는 연중 무휴를 기본으로 하며, 가맹점 사업자가 휴업할 경우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당사는 COFFEENIE(커피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 조정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점 이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	문의: 사업지원팀 (02-546-13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과 상의 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 수와 영업장에서 직접 근무하는지 여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및 위생도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매월	사업지원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매월	사업지원팀	
품질 및 조리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및 조리상태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매월	사업지원팀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	제품 및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사업자 수로 나눈 비율에 따라 산정	가맹본부는 광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에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책정하여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각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납입.	
지역단위/개별 광고	제품 및 브랜드 광고	-	전액 부담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가능)		
개별 판촉	개별 행사	-	전액 부담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가능)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판촉 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계약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 19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본사 또는 본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13p 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및 방문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제공 -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3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5~3(22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포의 여건,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및 교육이수 정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

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 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02-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스탬프 적립	커피니 멤버스 회원 적립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 내 커피니 멤버스 운영 기간	적립된 스탬프 사용시 원가 지원	익월 상품대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개점지원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①	절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지원팀 (02-546-1325)

상기 이외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적인 경영활동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COFFEENIE(커피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커피이론, 메뉴제조법(실습포함, 기기설비관리, 물류시스템, POS사용, 세무 및 서비스 교육 등	강의 및 실습	개점 전까지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제조법(실습포함) 서비스 교육 등	강의 및 실습	필요시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COFFEENIE(커피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교육사항에 따라 다름	없음	필요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자 외 가맹점의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인원 추가에 따른 별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개점 전 신규 교육을 이수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 시기가 연장될 수 있으며 가맹사업자는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2023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이촌역점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5 가 17-35
2	서울	목동YES24점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25, 대학빌딩지하
3	충남	망향휴게소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121
4	충북	청주공항점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79-9 청주공항 1층
5	대전	NJ타워점	대전 서구 둔산동 1279
6	대전	대전KDB산업은행점	대전 서구 둔산2동 946
7	서울	을지로4가역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80-2 지하
8	서울	종합운동장역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2 지하
9	서울	청량리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 1층
10	경기	일산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1 (장항동,1층)
11	서울	약수역점	서울시 중구 다산로 98 (신당동)
12	서울	논현그린타워점	서울시 강남구 연주로 619 지상1층
13	인천	제물포점	인천 남구 송의동 450-39 역사 내 위치
14	서울	논현한미점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63 ,1층101호(논현동)
15	경기	성모월병원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1 , (수진2동)
16	서울	공릉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97길 11 공삼빌딩

17	서울	중앙대 303관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03관 6층
18	서울	중앙대 310관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 1층
19	전북	KT 전주타워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일로 29 1층

상기 직영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3년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영점 3곳을 제외한 16곳의 평균값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재무팀 및 개발팀 (02-546-132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coffeenie.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제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COFFEENIE 전국 가맹점 목록 (2023. 12. 31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COFFEENIE 전국 직영점 목록 (2023. 12. 31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필수공급 주방기기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